



통권 494호

2024 | 10

#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임상교육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  
기 개설과목 「리갈 클리닉 II」 수업이  
지난 9월 2일 개강하였다. (관련 기사  
34면)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비롯해 법의 생활화 운동으로 진행  
하고 있는 찾장 법 교육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 본소 상담  
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  
다. (관련 기사 35면, 36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부 : 부정부패에  
패 : 패배하지 않게  
방 : 방패가 되어  
지 : 지킵시다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별기고 |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철회
- 11 • 특별기획 ❶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 20 • 특별기획 ❷ | 동지교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❸
-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❸
- 26 • 가정폭력상담실
- 28 • 어떻게 할까요
- 30 • 결혼과 인생(240) 영화 이야기  
    룩백 \_ 김용언
- 32 • 좋은 책  
    외로움의 습격
- 33 • 현장체험 연수 소감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7 • 소송구조



## ‘가족’과 ‘가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 더 자유롭고 넓은 관계로 나아가야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연휴가 지난 후 명절증후군으로 인한 불화로 부부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 이후 부부갈등으로 가정법원 출장 상담실을 찾아온 부부가 이혼상담을 하고 화해조정 끝에 돌아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상담소의 상담 통계에는 오랜 기간 가정 내에서 부부 간 갈등과 마찰로 인한 불화와 관련되어 우리 가정의 일정한 주기가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 후에는 이혼상담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경향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명절을 지내며 폭발한 갈등으로 상담소를 찾은 중년의 부부는 우리 사회에서의 여전한 가족 관계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회상의 변화가 급격하다고 해도 문화와 관습이 하루아침에 모두 바뀌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상의 변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정사의 모습도 크게 변화되었고 통계청의 통계도 이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 이혼이 급증한다고 했습니다. 2016년 추석 명절 전후 9월의 평균 이혼 건수는 9,300건이었는데, 10월에는 10,940건으로 790여 건 증가했습니다. 또 2016년 설 전후 2월의 이혼 건수는 8,100건인데 반해 다음 달 이혼 건수는 9,000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명절 전후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 무렵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에는 상담소에서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후에는 평소보다 이혼 상담 신청이 많고 실제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가사 분담과 시가와 처가 가족에 대한 도리 등으로 시작된 다툼이 평소 쌓였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입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0월 이혼 건수는 9,300여 건(8.8%)이었지만, 2021년 7,700여 건(7.6%), 2022년에는 7,500여 건(8%)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가족 모임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가족 갈등과 부부 갈등도 그만큼 적어진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근래에 상담 과정에서 보면 명절이 며느리들에게만 스트레스인 게 아닙니다. 아내의 심기를 헤아려야 하는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학업, 취업, 혼인 등을 과제로 둔 젊은이들도 본가나 고향 방문, 친척 모임 등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족, 가정은 무엇일까요.

더욱이 최근 경찰청의 통계는 우리 가족과 가정의 어두운 측면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073건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관련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에 874건, 2021년 913건, 2022년 935건, 2023년 955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집합 금지가 해소되고 다시 가족 모임이 활발해 지는데 따른 여파라 볼 수 있을는지요? 다시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족, 가정은 무엇일까요.

최근 개봉한 영화의 인상적인 포스터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벌하고 흩어지면 살만하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을 배경으로 했다는 영화입니다. 만나면 불화가 일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의무를 동반하여 가족이므로 때

마다 만나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어머니, 아내, 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되는 명절의 관습을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평등하게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의식을 개혁하고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상당히 해결되리라 생각해 왔지만 지금 우리 앞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철학적, 사회학적 사유와 고민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혈연과 혼인을 넘어서 어쩌면 ‘가족’과 ‘가정’이라는 범주 자체를 넘어 개인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 무엇, 윤리와 철학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 신문 칼럼 한편을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글쓴이는 젊은 작가로 일찍 인지장애를 앓게 된 아버지를 모시며 ‘돌봄’에 관해 많은 글을 쓰는 것으로 압니다. 그의 칼럼은 부모의 이혼, 할머니의 죽음으로 오래전부터 친척과 만나지 않게 된 자신의 명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무렵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엄마와 엄마의 애인 그리고 그 애인의 자녀로 이루어진 네 명의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명절마다 나는 늘 ‘개인’이었는데, 오랜만에 ‘가족’에 끼워 맞춰지니 낯설기만 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명절 이후 그와 만난 동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많은 혈연들을 만나고 노동하느라 지쳐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데 온갖 미디어에서는 가족 이야기만 해서 외로웠다고 했다. 가족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많은 이들이 소외되는 것처럼 보였다. 가족이 아닌 다른 공동체성을 감각할 수 있는 명절, 지금 시대에 더 어울리는 의례를 상상해 보면 어떨까? 돌아오는 설에는 다른 명절을 좀 기획해 봐야겠다.”

이 작가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철회

김 상 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는 말

민법은 유언의 자유와 유언철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유언을 한 사람은 그가 사망할 때(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을 자유롭게 철회하여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누구도 유언으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유언철회의 자유를 폭 넓게 인정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권리 침해나 거래안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적 의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유언과 유언의 철회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은 유언을 철회할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유언의 철회에 관하여 세 개의 조문(1108조, 제1109조 및 제1110조)을 두었는데, 유언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우선 제1108조는 제1항에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 유언을 철회하는 ‘생전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또한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정되어 유언의 철회가 의제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해석이 필

요한 부분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서술한다.

### II. 제1108조의 생전행위

1.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여기서 생전행위란 제1109조의 생전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제1109조의 생전행위와 동일한 개념이라면 굳이 제1108조에서 중첩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제1109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전의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한 때에는 전의 유언은 당연히 철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제1108조의 생전행위가 제1109조의 생전행위와 동일한 개념이라면 굳이 중복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제1109조에 의하여 유언은 당연히 철회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규정만으로도 유언 철회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제1108조에서 중복하여 생전행위로써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다는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유언은 철회되어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명시적으로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언을 실효시키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철회

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공인증개사에게 증개를 위임하였다면, 이는 유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유언의 철회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언자의 의사이므로, 유언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2. 유언철회의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제1108조의 문언상 굳이 그렇게 좁혀서 해석할 근거가 없다(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원래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언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언의 철회 역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유언의 취소 역시 동일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유언으로 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행위는 당연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제1109조, 제1110조에 따라 법정철회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수증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유언을 철회할 권리는 유언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그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제1108조와 제1109조 및 제1110조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규명해 보기 위해서 유언의 철회에 관하여 우리 민법과 비교적 유사한 규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민법과 프랑스 민법의 규정을 간단히 살펴본다.

오스트리아 민법은 제717조에서 유언의 철회에 관한 일반 조항을 두고, 유언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제719조에서 유언의 명시적 철회라는 표제하에 유언자는 유언으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제721조에서 유언의 묵시적 철회라는 표제하에 유언자가 유언서를 파훼하거나 유언서의 서명을 줄을 그어 지운 경우 등을 묵시적인 철회로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제721조에 열거된 사유를 한정적인 예시로 보고, 이 외에도 유언자의 철회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인 철회로 볼 수 있다고 한다.<sup>2)</sup> 나아가 오스트리아 민법은 제724조에서 유언 철회의 추정이라는 표제하에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인 물건을 매도하거나 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유증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은 여기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유증의 철회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유언자의 행위가 있으면, 유증의 철회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sup>3)</sup>

프랑스 민법은 유언의 명시적 철회 방법으로 유언으로써 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방법(이때 후의 유언은 전의 유언과 동일한 방식일 필요는 없음)과 공정증서에 의한 철회를 규정하고 있다(제1035조). 이어서 묵시적 철회로서 전의 유언과 저촉되는 유언을 하는 경우(제1036조)와 유증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제1038조)를 규정하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 민법과 프랑스 민법의 규정 체계를 참고한다면, 우리 민법 제1108조는 유언의 철회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볼 수 있고, 제1109조와 제1110조는 유언의 묵시적 철회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109조에서 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는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2021가단125136 판결 참조. 이러한 사례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제1109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제1108조의 생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1109조의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란 객관적으로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청구권은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매도인의 상속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이런 경우에 유증의 이행과 매매계약의 이행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생전행위가 전의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한 것만으로는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생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제1108조에 따라 유언을 철회하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Ferrari/Likar-Peer(Hrsg.), Erbrecht, S. 297.

3) Welser, Der Erbrechtskommentar §§ 531-824, S. 246; Rummel/Lukas(Hrsg.), Kommentar zum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Teil §§ 531-824, S. 159.

4) Claude Brenner, Philippe Malaurie,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LGDJ, 2020, p. 305 et s; Süß, Erbrecht in Europa, S. 589.

유언의 묵시적 철회를 의제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고(예를 들어 유증의 목적물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같이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행위), 반드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해도 유언을 실효시키겠다는 유언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제1108조의 생전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면, 생전행위로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의 태도는 이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 민법은 우리와 달리 유언에 의해서만 전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022조), 독일 민법(제2254조), 스위스 민법(제509조), 오스트리아 민법(제717조) 역시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전의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프랑스 민법은 유언 방식에 의한 철회 이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는데, 후자는 일종의 생전행위에 의한 철회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민법 제1035조).

이와 같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민법이 유언 이외에 생전행위로서 전의 유언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에게 유언철회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즉 유언의 철회는 굳이 유언으로만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생전행위에 의해서도 유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언철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언의 철회에 관한 일본 민법 규정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우리 민법의 입법자<sup>5)</sup>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철회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I. 제1109조에서 ‘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

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본 민법 제1023조를 모델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까지 제110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 민법 제1023조의 해석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 민법 제1023조와 그에 관한 해석론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일본 민법 제1023조(전의 유언과 후의 유언의 저촉 등)

- ① 전의 유언이 후의 유언과 저촉되는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의 유언으로 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유언이 유언 후의 생전처분 그 밖의 법률행위와 저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우리 민법 제1109조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상응하는 일본 민법 규정은 제1023조 제2항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해석론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sup>6)</sup>

「제1023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유언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유언의 철회를 의제하려는 것이다.

생전처분이란, 유증의 목적인 특정 권리 또는 물건에 대한 생전행위인 처분행위, 예를 들면 소유물의 양도, 기부행위, 지상권의 설정, 특정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 등을 말한다.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묻지 않는다. 또한 기타 법률행위란, 유증목적물에 대한 생전의 처분행위 아닌 법률행위 및 재산과 관계없는 일체의 법률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면 매매, 교환 등의 채권계약의 체결, 제사주재자의 지정 기타 신분행위 나아가서는 사인증여와 같은 사후행위 등을 말한다.

여기서 저촉이란, 앞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으면 그리

5)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하권(친족편·상속편), 단기 4290년(1957), 221면에는 유언의 철회(제1115조: 遺言者は 언제든지 遺言 또는 生前行為로서 遺言의 全部나 一部를 撤回할 수 있다. 遺言者は 그 遺言을 撤回할 權利를 拋棄하지 못한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외국 입법례로서 유언의 철회에 관한 독일 민법(제2253조 제1항, 제2254조), 스위스 민법(제509조), 프랑스 민법(제1035조), 중국민법(제1129조) 규정 등이 소개되어 있다.

6) 新版注釋民法 28(相續 3)(補訂版), 404면 이하.

한 행위가 유효가 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면 앞서 갑에게 유증한 부동산을 후에 을에게 증여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반드시 후의 행위에 의하여 전의 유언이 법률상 또는 물리적으로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면 된다. 저축 여부 및 그 범위는 한편으로 유언 해석의 문제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들 행위의 해석의 문제이다. 요컨대 이들 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다음 결정하여야 하지만 어쨌든 유언자의 의사를 증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본 민법의 해석론은 우리 민법 제1109조의 해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여기서 말하는 ‘저축’이라 함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저축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해석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법 제1109조의 생전행위는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진 법률행위 일반(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유언 후 유증의 목적

물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유언자)의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대금지급청구권을 상속하게 되므로,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국에서도 유언과 저축되는 생전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무부담행위, 즉 채권행위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민법 제724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유증의 목적물을 매각한 경우에는 유증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데, 의무부담행위, 즉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유증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sup>7)</sup> 또한 스위스 민법 제511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유증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유증이 철회된 것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처분은 피상속인의 철회의사가 드러난 모든 생전의 의무부담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8)</sup> 프랑스 민법 제1038조는 “유증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유증이 철회된다”라고 규정하는데, 판례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증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서 매수자와 합의한 경우에 유증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가격이 합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철회를 인정한다).<sup>9)</sup>

3. 민법 제1109조의 생전행위가 유효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국내의 학설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전행위는 유효하여야 하고, 유언과 저축되는 부분의 효력이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sup>11)</sup>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7) Rummel/Lukas(Hrsg.), Kommentar zum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Teil §§ 531-824, S. 159.

8) Wolf, Hrubesch-Millauer, Schweizerisches Erbrecht, S. 151.

9) Civ. 1re, 24 avr. 1985: D. 1986. 153, note A. B.; Civ. 1re, 8 avr. 1986, no 84-16.167 P: R., p. 136.

10) 반면에 프랑스 민법은 이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 제1038조는 “유증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유증이 철회된다. 이때의 양도는 환매 의사를 가진 매도나 교환을 포함하는 모든 방식의 양도를 말한다. 만약 해당 양도가 무효이거나 양도된 목적물이 다시 유언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한다. 즉 프랑스 민법은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유증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Civ. 3e, 4 juill. 1979, no 78-12.455 P: D. 1980. IR 139, obs. D. Martin. Comp. Civ. 6 janv. 1930: DH 1930. 180; S. 1931. 1. 289, note Simonnet; Civ. 1re, 11 mars 2003, no 00-16.663). 이는 유언자의 의사를 한층 더 강조하는 입법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1) 박윤직, 상속법, 242면.

살펴본다. 이러한 법리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sup>12)</sup>에서 나온 것으로서 법률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온 때,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에 생전행위의 효력이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생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유증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을 허가를 받으면, 유언에 저촉되는 생전행위의 효력이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은 유언자의 의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생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유증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출연하였는데, 유언자의 사망 직후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왔다면, 생전행위의 효력이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출연부동산은 재단법인에 귀속될 수 없게 된다. 언제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왔는가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유언자의 의사 해석이 좌우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단 유언자가 객관적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IV. 현대법의 경향

##### -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경향의 강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유류분제도 중에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sup>13)</sup>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조항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한 제1112조 제4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공통적인 경향이 자리 잡고 있다.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배제하고 생전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 형제자매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면, 그러한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는 실

현될 수 없다.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한 결정은 결국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을 학대, 유기하여 그 사이의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결격에 이르지 않는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이들을 상속에서 배제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상실규정을 도입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명한 것 역시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유류분상실제도는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증여 또는 유언을 통해서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언으로 유류분마저 박탈함으로써 상속재산으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기여상속인이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때문에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역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유언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도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2) 日最判 1968. 12. 24, 民集 22-13, 3270; 新版注釋民法 28(相續 3)(補訂版), 408면 이하.

13) 헌재결 2024. 4. 25, 2020헌가4 등.

## 특별기획 ①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소개

199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가사소송법」은 올해로 33년이 되었다. 그동안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일부 소폭의 개정은 있었으나 가족의 변화와 가사재판절차의 특수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있어 전면 개정을 통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법률안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으나 국회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사사건에 있어 국민의 인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10월 25일(금)에 본소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하에서는 심포지엄의 기초 자료이자, 2022년 11월 11일 국회에 회부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본 상담소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가사소송법이 반드시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예정이다.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1. 제안이유

「가사소송법」은 제정·시행(1991. 1. 1.)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등 법의 체계를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 법에서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다른 법의 준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의안번호 18198, 2022. 11. 10. 정부 제출

| 현행                                                                                                                                               | 개정안                                                                                                           |
|--------------------------------------------------------------------------------------------------------------------------------------------------|---------------------------------------------------------------------------------------------------------------|
| <b>제1조(목적)</b>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b>제1조(목적)</b>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주요내용

### 가. 제1편 총칙

#### 1)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법의 목적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남녀 평등을 양성의 평등으로 수정하고, ‘친족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삭제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여 목적 규정이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반영하도록 함.

#### 2) 법원 및 당사자 등의 책무규정, 당사자 및 관계인의 생활 보호의무 규정 등 신설(안 제2조, 제3조)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절차가 적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절차를 수행할 것을 규정함. 또한 법관, 법원공무원, 그 밖에 직무상 지위로 인하여 가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람은 당사자와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 3)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가) 가사사건 분류를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함.

나) 종전에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가사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을 가정법원 관장 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함.

- 알기 쉬운 분류와 체제 정비로 국민의 가사재판 절차에 대한 접근성 증대

### 〈가사사건의 분류체계〉

| 현행                  | 개정안                                            |
|---------------------|------------------------------------------------|
| 가류 · 나류 ·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별표 1 제1호)<br>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별표 1 제2호) |
| 라류 가사비송사건           |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별표 2)                           |
| 마류 가사비송사건           | 가사비송사건(별표 3)                                   |

〈개정안에 따른 가사사건의 상세 분류 체계〉<sup>1)</sup>

[별표 1]

가사소송사건(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유 형               |                    | 사 건 내 용                                                                                                                                                                                                                                                                                  |
|-------------------|--------------------|------------------------------------------------------------------------------------------------------------------------------------------------------------------------------------------------------------------------------------------------------------------------------------------|
| 1. 가족관계<br>가사소송사건 | 가. 혼인관계 사건         | 1) 혼인의 무효<br>2) 혼인의 취소<br>3) 이혼의 무효<br>4) 이혼의 취소<br>5) 재판상 이혼<br>6)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                   | 나. 부모와 자녀 관계<br>사건 | 1) 아버지의 결정<br>2) 친생부인<br>3) 인지의 무효<br>4) 인지의 취소<br>5) 인지에 대한 이의<br>6) 인지청구<br>7)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br>8) 입양의 무효<br>9) 입양의 취소<br>10) 파양의 무효<br>11) 파양의 취소<br>12) 재판상 파양<br>13) 친양자 입양의 취소<br>14) 친양자의 파양<br>15)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
| 2. 재산관계<br>가사소송사건 |                    | 가. 약혼의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br>나.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br>다.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br>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br>마. 피인자 등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

1) 지면사정으로 별표 1과 별표 3만 게재함.

[별표 3]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 사 건 내 용                                                                                      | 근 거 규 정                                                                                                                                           |
|----------------------------------------------------------------------------------------------|---------------------------------------------------------------------------------------------------------------------------------------------------|
| 1.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                                                                                                                                                   |
| 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                                                                                                                                |
| 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 「민법」 제829조제3항                                                                                                                                     |
| 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                                                                         |                                                                                                                                                   |
| 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3조 |
| 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및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다.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민법」 제922조의2                                                                                                                                      |
| 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                                                                                                                |
| 3. 부양에 관한 사건                                                                                 |                                                                                                                                                   |
| 부양에 관한 처분(친족 사이의 구상청구를 포함한다)                                                                 |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                                                                                                                                |
| 4. 상속에 관한 사건                                                                                 |                                                                                                                                                   |
| 가. 기여분의 결정                                                                                   |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                                                                                                                            |
| 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 「민법」 제1013조제2항                                                                                                                                    |

#### 4)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안 제6조)

지방법원은 제1심이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이고, 이들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민사사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이 해당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도모

#### 5)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가) 가정법원에 사실조사나 필요한 검사 등을 하는 가사조사관을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정원·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및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단체 등과의 연계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 /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등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연계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6)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sup>2)</sup>(안 제16조)

가)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절차보조인은 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술을 보조하는 등 미성년자를 돕는 역할을 함.

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도 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절차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7)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 강화(안 제20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진술을 듣도록 함.

-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2) 신설규정. 독일은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절차보조인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신상과 관련된 친자관계 사건에서 자녀의 이익이 법정대리인과 상반되는 경우나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이 고려되는 경우, 그리고 자녀를 감독하고 있는 자로부터 분리하는 경우 및 자녀의 인도나 면접교섭권의 배제 또는 제한이 고려되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보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158조제1항). 독일의 절차보조인은 관계인의 지위에서 절차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58조제4항) (김상용,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사법』 제27호, 사법발전재단, 2014, p.82).

에는 자녀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데(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이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진술을 듣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의사가 재판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제2편 가사소송

### 1) 소송능력 규정 신설(안 제28조)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가사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의 소송능력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제기 및 상소제기와 같은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가사소송에서의 자율성과 적극적인 절차 주도권 인정

### 2) 소송절차 공개의 예외 사유 및 절차 규정(안 제30조)

재판장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사건 본인, 증인, 절차보조인 또는 가사조사관이 공개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사생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소송절차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3)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안 제31조)

가정법원은 이혼의 무효,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소송 재판 결과로 인하여 신분 및 재산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을 통지해 주는 의무적 통지제도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인의 소송절차 참여권을 보장

### 4)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추가(안 제37조)

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함.

- 자녀 양육 중인 소송당사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줄이고 자녀 양육공백을 방지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 도모

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제13조 제2항), 원고의 주소지가 지방이더라도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불합리함과 불편 해소

### 5) 재판상 이혼·파양사건의 청구의 포기·재판상 화해 허용(안 제41조, 48조)

재판상 이혼과 파양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

다. 제3편 가사비송

- 3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법의 가사비송(제3편)을 3장 15절 78개 조문으로 대폭 확장하였음.

## 1)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및 각칙 편제 정비 (제3편)

가)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나)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 2)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가) 가사비송사건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상대방 없는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제1심 재판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은 대심적 구조로 진행됨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함.

나) 미성년자,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개시,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정지 등의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

## 3) 가사비송사건 재판의 방식(안 제67조)

가사비송사건의 실체에 관한 중국재판의 본질은 결정이고, 상급심의 재판형식도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

국제판의 형식을 심판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 4) 가사비송사건 불복제도 정비(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즉시항고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합하여 법률에 규정함.

## 5)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 정비(안 제83조 및 별표 4)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의 범위를 사건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 6) 친권에 관한 사건의 관할 규정 개정(안 제104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 규정함.

## 7)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 인정 (안 제114조)

가사소송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8)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 권고결정 근거 마련(안 제116조)

가)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친권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성질상 화해

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가사비송사건은 제외함.

나) 가정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4편 가사조정

### 1)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제도 등 준용 (안 제126조)

종전에는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민사조정법」 준용을 확대하여 대표당사자 제도와 원용 금지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가사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함.

### 2) 조정의 원칙 명시(안 제136조)

가) 조정기관은 조정을 할 때에 당사자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분쟁을 평화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나) 조정기관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함.

### 3)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 (안 제138조)

가정법원은 조정이 신청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

하여 관련 사건으로 이송된 민사사건의 경우도 지방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함.

마. 제5편 이행의 확보<sup>3)</sup>

###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안 제140조)

가)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우 현상 변경 행위나 물건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처분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변경 제도를 신설함.

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

- 현행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의 집행력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음(가사소송법 제62조제5항). 개정안에서는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사전처분에 집행력 부여는 양육비나 생활비가 시급히 필요한 가정의 안정과 복리를 기하고 사전처분의 실효성 도모

- 사전처분에 관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안 제142조), 담보제공명령(안 제143조), 이행명령(안 제144조) 등과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에서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개정안 제140조 제6항)

### 2)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 (안 제145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함.

3)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가정상담 2024년 9월호, pp.6~13 참조.

- 의무자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이행명령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집행법원이 인도청구 집행을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에 자녀의 연령 및 의사능력 유무, 자녀의 의사, 건강 및 심리상태, 자녀의 양육상황, 당사자와 자녀 사이의 상황 및 집행에 따라 자녀가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
- 집행관이 미성년 자녀의 인도 집행을 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자녀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인도 집행시의 유의사항 규정

바. 제6편 벌칙

#### 1) 감치명령 요건 완화(안 제151조)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기(期) 이상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 부양료·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 현행법 하에서는 감치명령 요건 구비 시까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감치를 피하기 위한 제도 악용과 일시금 지급과 정기금 지급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위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함.

#### 2) 벌칙상 과태료 및 벌금액수 현실화(안 제146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가)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

나)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보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각각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재산조회 결과 등을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임.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특별기획 ②

가정폭력예방 지침\*\* 동지교실 VIII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8)

## 제 6 강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정신증(조현병과 조울병)

### ■ INTRODUCTION

6강에서는 정신증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정신증과 신경증의 차이를 구분하고, 정신증의 종류와 발병 시 특징, 치료 단계 등을 알아보며 정신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한다. 특히 조현병과 조울증 환자의 사례를 통해 정신증을 앓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 ■ POINT

### 1. 서론

신경증과 정신증은 구분된다. 신경증은 불안이나 강박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을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증은 밖에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환청을 겪는다. 정신증 환자의 뇌를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확인해보면 실제로 뇌의 청각 부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현실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도 정신증 환자의 뇌에서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 소리는 주로 정신증 환자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내용이다. 정신증 발병 초기에는 환청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소리가 지속되면서 나중에는 환자 본인도 환청이 진짜라고 믿게 된다. 현실과 현실 아닌 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신증은 ‘현실 검증력’에 전반적인 어려움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동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동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이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신경증과 정신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현실 검증력이라고 할 수 있다.

## 2. 본론

### (1) 정신증과 조현병

정신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망상장애는 다른 증상은 없이 망상만 나타나는 것이다.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 현실처럼 느껴지는 망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의 경우 배우자가 마치 실제로 부정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망상이 논리정연하고 현실처럼 느껴진다. 반면 조현병의 망상은 그렇게까지 논리적이지는 않아 쉽게 현실과 구분할 수 있다.

조현병은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나뉜다. 양성증상은 보통 사람들에게 없어야 할 것이 있는 현상이다. 환청증상을 예로 들 수 있다. 환청이 있다 보면 외부인이 자신을 헐뜯고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이 생기기 쉬워진다. 음성증상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그것이 없다. 감정이 둔화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힘들어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있는데, 중뇌변연계 부위에 도파민이 과도하게 흐르면 양성증상이 발현된다. 반면 중뇌피질 부위에 도파민이 적게 흐르면 음성증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조현병 처방 약물은 도파민이 제대로 적정하게 흐르도록 작용하는 약이다. 그러나 완벽한 약물은 없으므로 음성증상 개선 효과는 한계가 있고, 손 떨림,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조현병의 주요한 세 가지 증상은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증, 음성증상 그리고 와해한 행동이다. 조현병 환자의 와해한 행동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눈치가 없어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코드를 맞추지 못한다는 식으로 여겨진다. 정신증은 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에 발병한다. 이 전까지 정상적으로 기능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증 발병으로 자신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낀다. 이에 자살 시도를 많이 하게 되며, 양성증상은 폭력적 또는 우발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많은 조현병 환자가 병식(자신의 병을 인식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양성증상, 음성증상 등은 기능손상을 일으킨다. 감정이 점점 둔화하거나 감정의 극심한 변화가 일어난다. 전반적인 인지 변화로 주의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는다.

### (2) 정신증의 진행

정신증이 발병하기 전에 조짐을 보이는 구간을 ‘전구기’라고 한다. 전구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8년까지 된다. 따라서 10대 후반에 발병했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구기가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위험한 조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진행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발병하게 되면 급성으로 증상이 발현된다. 치료 시기에 적절하게 개입해야 예후가 좋다. 영국은 정신증이 발병하고 3개월 이내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병 후 평균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된다. 본인과 가족이 정신증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다가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이미 만성 환자가 되어서 치료가 매우 힘들어진다. 급성증상 조절 후 안정화 단계로 재활 프로그램, 사회기술 훈련 등을 받아서 환자가 회복되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을 잘 안 먹게 되는데, 약을 안 먹게 되면 많은 경우 재발된다. 45세 전후로 나이가 들면서 ‘안정기’에 진입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완경기 전후에도 발병 우려가 크다. 물론 사회화 정도가 높아 나이가 들어서 발병했을 경우에는 약물치료만 잘하면 거의 원래 기능을 회복한다. 하지만 20대에 발병한 사람들은 청소년 시기부터 문제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사회화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 (3) 양극성장애 : 조울증

조울증은 우울과 조증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조울증은 기분장애보다 정신증에 더 가깝다. 조증 상태에서

는 환각과 망상이 일어나며 잠을 잘 자지 않고 과도한 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우울증일 때는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이다. 무기력한 우울증이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조증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지며 팽창되고 과장된 자신감을 내비친다. 대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조울증일 가능성이 크다. 조울증의 이러한 기분 변화를 치료하지 않으면 사건이나 자극 없이도 기분의 변동이 심해진다. 조울증 환자의 특징은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가족의 어떤 문제에 쫓히면 상대방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든다. 조울증은 우울증보다 예후가 불량하고 조증 상태일 때는 과도한 소비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 나이에 발병하거나 발병 전에 실직 상태 또는 알코올에 의존하고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이 결합되어 있다면 예후가 매우 안 좋을 수 있다. 보통 10대 또는 20대 초기에 서서히 발병한다.

#### (4) 조현병에 대한 체험적 이해

먼저, 조현병 발병 직후 환자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특징이다. 투병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병에 대한 낙인 때문에 세상과 떨어져 있어서 이 틈을 한꺼번에 좁힐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정신보건기관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도움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본인들의 큰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한다. 또한 약물치료를 하고 있지만 병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없음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망상이 심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치료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강제입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강제입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다. 약이 도움도 되지만 약 자체가 과도하게 분비되던 도파민을 눌러주게 되므로 원래 잘 기능하던 부분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특히 병식이 없는 환자들은 약 때문에 더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약을 끊으려고 하거나 자발적으로 약을 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상황을 보면 발병 이후 의지

할 곳이 어머니밖에 없게 되면서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모든 욕구를 해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러 사람에게 풀어야 할 욕구를 모두 어머니에게 풀면서 어머니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족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환자를 통제하거나 환자에게 어떤 규범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이 과잉 감정 표출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병의 악화나 재발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한 감정표현은 되도록 자제하고,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긍정하는 편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생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가족들이 마치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는 꼭두각시처럼 시달리는 상황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조현병 환자들은 고통을 인내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정신증에 대한 고통은 오롯이 가족들이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가족들도 함께 치료받고 교육받아야 한다.

또 조현병 당사자는 거부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제당하고, 버림받는 느낌을 매우 힘들어한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병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약물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에 적절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이에 따라 초기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 (5) 조현병 당사자가 바라는 삶

첫째,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기준 때문에 세상을 마주하여 부정적 모습이나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회피한다. 그리고 성격적, 기질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감당하기 힘들어한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데, 조현병 환자들은 아름답고 선한 세상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서 실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인정을 갈망하는 특성이 있다. 인간은 인정받아야 살 수 있는데, 정신적 문제로 인정받을 기회가 없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많은 환자가 예술적 분야에서 대안을 찾고 이곳에서의 성공을 바탕

으로 그동안 받지 못한 보상을 누리려 한다. 하지만 본인이 기대하는 바를 성취하기에는 현실적인 능력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 간극으로 인해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인다.

셋째, 확신을 요청하는 특성이 있다. 조현병 환자들은 현실과 비현실이 중첩되므로 뚜렷하게 확신받고 싶어 한다.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려 해도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신을 요청한다. 이럴 때는 생각하기보다는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몸을 직접 움직임으로써 과도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환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뭔가를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사지 말라고 조언한다. 고민 끝에 사게 됐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조증 상태에서는 쇼핑 중독이나 과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넷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희망한다. 환자들은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며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고 좌절한다. 우선은 소규모의 지지적인 사람들 속에서 인간관계를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 3. 결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적절한 일을 주는 것이다. 일이 있으면 나갈 곳이 생기고, 일을 통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경제적 보상을 얻어 현실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에서부터 사회 재활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한 일상과 일과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맙습니다

### 2024년 9월 자원봉사자

####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 대학생 자원봉사

정정연, 정가영, 정윤지, 류제빈, 김민서, 이양현, 나윤우, 김연지, 서채영, 고유진, 김태연, 최연지, 김민지, 정재경, 박수빈, 노태연, 김소영, 정태윤, 김현빈, 오나현, 강민서, 김용평, 이현지, 조민규, 손예린, 김지원, 김주하, 한아름, 이재영, 장진혁, 최민제, 강영진, 김시현, 하유지, 이서연, 황예원, 원서영, 김상은, 이혜원, 이채윤, 이다경, 임성완, 김예지, 김경민, 이경주, 윤서영, 구가연, 손유정, 김예원, 천장원, 원대한, 김온유, 김지우, 정민주, 김유빈, 장다원, 이은세, 최서연, 이다빈, 방승현, 유세현, 전서영, 문정현, 김다현 님

### 후원 고맙습니다

####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최문원 님

####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 제1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작 (2)

#### 2. 친족상속편 기초안 성립 과정

법전편찬위원회는 법전을 편찬함에 있어서 ‘법전편찬위원회 처무규정’에 준거하여 일을 진행하는데, 이 처무규정에 따르면 요강의 기초위원은 요강의 작성 및 법안의 기초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 이 요강은 분과위원회 및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동 제11조), 법안의 결정은 다시 분과위원회 및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동 제12조).

이러한 규정에 따라 민법 중 친족상속편 기초는 민법 기초위원인 장경근에게 맡겨졌다. 장경근은 보조위원인 장승두와 함께 우선 ‘친족상속법 입법방침과 친족상속법 기초요강 사안’을 작성하여 『법정』 9월호(1948년)에 발표해서, 법전편찬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기기 전에 학계와 여론의 검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회 상황하에서의 친족상속법 입법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당시 친족상속법 입법 방침에 대한 견해는 다양했지만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는 현실 내지 관습

존중론에 입각한 입법 방침, 둘째는 점진적 개혁론에 입각한 입법 방침, 셋째는 제정헌법 정신에 입각한 급진적 개혁파의 입법 방침이었다.

장경근 사안은 이러한 다양한 견해 속에서 점진적 개혁론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즉 장경근은 친족상속법이란 민주주의 이념을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따라가고 적응하는 한도 내에서 관습과 진보 그 중간에 서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민법전의 기초에 착수하여 친족상속편 기초위원인 장경근(보조위원 장승두)이 작성한 ‘민법 친족상속편 요강 사안’을 중심으로 친족상속편 요강의 심의를 시작한 것은 1949년 6월 11일이었다.<sup>1)</sup>

법전편찬위원회는 수차에 걸친 심의 끝에 장경근 요강 사안에 수정을 가한 42개 항목의 친족편 요강과 7개 항목의 상속편 요강을 제11회 총회에서 ‘민법 친족상속편 원요강’으로 공식 성립시켰다. 이렇게 성립된 원요강은 민법 친족상속편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것으로, 장경근 사안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원요강과 장경근 사안의 차이점은 이태영,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1)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증보판, 법문사, 1961, p.38

상답소, 26~28쪽 참조)

법전편찬위원회는 원요강이 확정되자 곧바로 친족상속편 법안의 기초를 작성하는 일을 서둘렀는데, 이 기초안 작성 역시 민법기초위원인 장경근과 장승두 두 사람에게 위촉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척되지는 못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만 것이다. 한국전쟁 와중에 법전편찬위원회는 위원 10명을 잃게 되는데, 이 중에는 장승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경근은 피난정부의 국방부 차관으로 공무에 바빠 역시 기초안을 작성하는 일에 매진할 수 없었다.

김병로 위원장은 이러한 난국의 상황에서 초안 작업을 위촉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초안 작성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임을 절감하고 자신이 직접 법안을 기초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사정으로 기초 이유서나 제안 설명서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후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때 고충을 겪기도 했다.

김병로 위원장이 민법을 기안할 때 가졌던 생각은, 국회속기록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권리남용 금지와 개인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둘째, 친족상속법은 기본 논리보다는 자기 나라 및 민족의 윤리와 역사적 전통을 가장 중요히 여겨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2)</sup>

이러한 시각에는 남녀평등 이념에 입각한 민주헌법에 위배되더라도 ‘민족의 윤리와 역사적 전통’ 위에 입각한 관습법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생각이 짙게 배어 있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윤리와 사회도덕에 대하여 우월감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스스로도 “건실하고 순풍미속이라고 인정할 만한 점은 장려하고 완성시킬 의도하에서 친족상속편 기안을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만들어진 탓에 동성동본 혼인금지를 진보된 문화의 증거로 삼고, 서구 지향적인 사고를 배척했다. 그는 개인주의의 팽배로 가족제도가 위협당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집이란 인간의 기본을 나타내는 고등문화의

소산으로서 부계 계통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제도이며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떨어진 분자이므로 그 분자의 종자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족제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러한 고집과 선입견은 남녀평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는 남녀평등을 정치·사회·문화의 방면에서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우리 역사상 가정의 윤리, 존속간의 윤리, 사회도덕의 문화까지 모두 남녀평등에다 혼동해서 말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였다.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평등을 찾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며, 그 폐해가 은연중에 심해져서 도의와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그의 친족상속편 기안의 취지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 민법 친족상속편 기초는 원요강 성립 후 3년 만인 1952년 7월 4일에야 일단 축조기초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원요강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기초안이 되고 말았다.(친족상속법 기초안과 원요강과의 차이점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32~36쪽 참조)

이렇게 원요강과 기초안이 다르다는 것은 법전 편찬의 준칙에 어긋난 일이었다. 왜냐하면 법전을 편찬함에 있어서는 ‘법전편찬위원회 처무규정’에 준거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처무규정에 의하면 “법안의 기초는 요강에 의하여야 하며 법안의 결정은 분과위원회 및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사항은 재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의에 부(附)하기 위하여는 (가) 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위원장이 결정된 법안으로서 결루·착오가 있거나 결정된 타법안과 저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김병로 위원장에 의해 만들어진 친족상속편 기초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편집부

2) 김병로, 민법안의 기초취지설명, 국회속기록 제30호, 1957. 11. 6. 이태영,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2, p.31에서 재인용.

## 부부 사이 폭언과 폭행, 외박 등 갈등 반복 끝에 별거 결정했으나 서로 책임 인정하고 자녀의 자존감 훼손하지 않도록 당부해

2021버1\*\*\*폭행/ 2021버1\*\*\*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3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7회 등 16회

### 상담기간

2021. 9. 17. ~ 2022. 5. 31.

###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10세)이 있다. 2021년 5월 사건당일 남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가 자신에게 집착증이 심하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눕힌 뒤 목을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을 하고,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잡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여 부부는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각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남편은 결혼 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결혼 후에도 4~5회 아내를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5년 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갈등요인으로 남편은 아내가 친한 언니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것을 꼽았고, 아내는

남편의 폭력적인 말투(욕, 아내에게 “계집애야”라고 부르고 아들에게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를 꼽았다. 첫 상담시 아내는 이혼을 고려하는 심정을 토로하였고, 남편은 이혼의사는 없으며 아내의 음주와 외박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랐다.

부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상호 바라는 바를 수용하는 노력을 하기로 하였고 실천사항으로 남편은 폭력대화 하지 않기, 아내 배려하기, 경제적 책임을 포함하여 열심히 살기를, 아내는 감정 조절하기, 폭력대화 하지 않기 등을 정하였다.

중간 점검 결과 부부는 격렬하게 충돌하며 다투지는 않았으나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계집애야”라고 부르고 아들에게도 폭언을 하였으며, 아내도 빈도는 줄었으나 외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부는 이를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이후 상담에서 두 사람은 이전보다 순화된 태도를 보여주었고 특히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후 아내의 외박이 문제되어 다투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였고 남편이 불응하자 별거를 통고하고 집을 나갔다. 상담자가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혼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아들의 의사를 확인한 남편은 별거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는데, 힘들지만 아내의 행동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되어 갈등이 없는 점을 다소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하였다. 아들은 자유 의사로 아버지와 살면서 어머니와 자유롭게 왕래하기로 하였다. 현 상태를 초래한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배우자에 대한 험담, 비난 등을 자제하여 아들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기를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 2021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4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집단상담 4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5회

### 상담기간

2021. 11. 25. ~ 2022. 6. 6.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재혼한지 4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부부 모두 전배우자와는 이혼하였다. 행위자에게는 전혼 자녀 1남 1녀(26세, 14세)가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전혼 자녀가 없다. 행위자의 전혼 자녀들은 부부와 같이 사는데 아들은 군 복무 중이다. 부부는 중학교 동창으로 이혼후 동창 모임에서 만나다가 결혼에 이르렀다.

행위자는 2021년 3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서 남자들과 음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귀가 후 화

를 내며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놀란 딸이 신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되었다.

행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폭력행위를 반성하고 상담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또한,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부 여행을 다녀오고, 평소 피해자의 바람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일하기, 기회되는대로 여행가기, 가사 더 열심히 하기를 실천과제로 정하고 노력하였다.

중간 점검 결과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부부간 대화를 많이 하고,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함과 동시에 부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점이 개선 요인으로 꼽혔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상담 기간 중 피해자에게 어떠한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도 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고, 피해자는 행위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행위자는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점, 종결시는 9점으로 평가하고, 부부가 서로 말을 조심하고 여행 등 문화생활을 같이 하게 된 것을 변화된 점으로 꼽았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 2024년 9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 구분                      | 프로그램명              | 날짜   | 참석인원 | 주제                              | 강사                           |
|-------------------------|--------------------|------|------|---------------------------------|------------------------------|
| 가정폭력피해자<br>치료회복<br>프로그램 | 개별상담/부부상담/<br>가족상담 | 연중   |      |                                 | 본소 상담위원                      |
|                         | 라오니모임              | 9/5  | 14명  | 긍정적 사고                          | 장희숙 교수<br>(성공회대학교<br>사회복지학과) |
|                         |                    | 9/19 | 10명  | 원가족 탐색                          |                              |
|                         | 음주문제 집단상담          | 9/6  | 4명   | 음주와 공동의존                        | 김혜선 교수<br>(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                    | 9/27 | 6명   | 음주와 회복                          |                              |
| 가정폭력행위자<br>성행교정<br>프로그램 | 개별상담/부부상담/<br>가족상담 | 연중   |      |                                 | 본소 상담위원                      |
|                         | 집단상담               | 9/4  | 11명  | 사람관계, 거기가 거기                    | 이서원 대표<br>(한국감정케어센터)         |
|                         |                    | 9/11 | 9명   | 관계의 비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                              |
|                         |                    | 9/25 | 11명  | 잘 살고 못 사는 방법, 종이 한 장 차이         |                              |
|                         | 동지교실               | 9/11 | 48명  |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초래하는 우울<br>(+인지행동치료) | 황순찬 초빙교수<br>(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 음주문제 집단상담          | 9/6  | 15명  | 음주와 공동의존                        | 김혜선 교수<br>(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                    | 9/27 | 14명  | 음주와 회복                          |                              |



## 부모와 자녀 ② - 양자, 친양자 ②

### ●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할 수 있다

**Q** 문 29 | 15세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도 못 가게하고 심하게 구타하고 협박하면서도 입양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이를 입양할 방법이 없나요?

**A**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그리고 양자가 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동법 제869조 제1항),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870조 제1항). 그러나 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69조 제3항 제1호, 제870조 제2항).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학대당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입양에 대한 동의

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할 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의 전혼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Q** 문 30 | 사별하고 10살인 아들을 혼자 키우던 남자와 결혼하여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전처가 낳은 아들은 저를 잘 따라 제 친자녀 이상으로 사랑을 쏟으며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와 법적으로 모자관계를 맺을 방법이 있나요??

**A**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이 아버지의 입양승낙을 받아(민법 제869조 제2항)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심판청구를 하여 입양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67조). 양자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관계를 맺고 싶다면 친양자입양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908조의2, 가사소송법 제44조 제4호).

### ● 성년이면 미혼 여성도 입양할 수 있다

**Q** 문 31 | 저는 35세의 미혼 여성으로 초등학교 교사인데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합니다.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아이(현재 10살)를 입양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6조). 따라서 귀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동법 제867조), 이때 아이의 법정대리인과 부모의 입양승낙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869조 제2항, 제870조 제1항 제1호).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2024) 중에서



Q 얼마 전 딸이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하였습니다. 딸은 사위와 사별하고 어린 손자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손자는 저와 함께 살았고, 딸의 사망 후에도 여전히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딸의 장례를 마치고 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딸이 아이를 키우고 병을 치료하느라 많은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손자가 딸의 빚을 상속받는다면서 빨리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손자가 딸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A 딸의 상속인인 손자가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받으면 손자는 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는 손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손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없으므로 손자를 대리하여 위 절차를 밟아 줄 사람을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손자의 한정상속승인 사건에 관하여 귀하를

손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 결정을 받은 후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두 번째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걸린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별대리인선임의 효력은 한정상속승인 사건에 한정하여 미치므로 귀하가 손자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추후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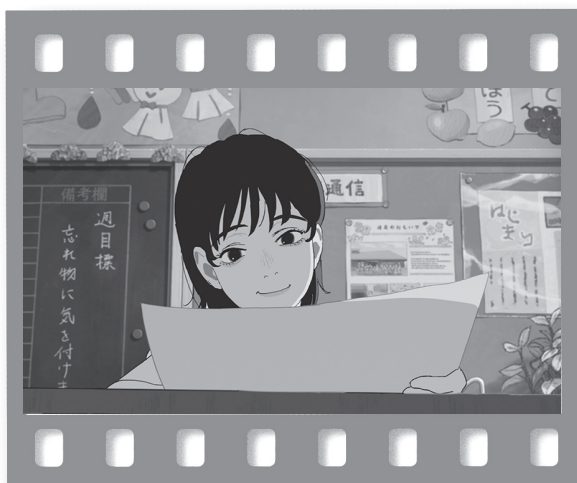
두 번째로는 법원으로부터 귀하를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받은 후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은 법원에서 신중하게 심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 심판” → “한정상속승인 심판”이라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방법은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받기까지 첫 번째 방법보다 장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 후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 〈록백〉

감독 요시아마 기요타카

목소리 출연 가와이 유미, 요시다 미즈키



초등학교 4학년 후지노는 학교 신문에 매주 4컷 만화를 연재하며 친구들과 선생님의 찬사를 받는다. 그러다가 동료 거부하는 다른 반 동급생 교모토가 그린 4컷 만화가 신문에 실렸을 때 후지노는 충격받는다. 지금까지 자신의 재능에 대해 한껏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교모토의 섬세하고 정밀한 풍경 묘사는 도저히 같은 나이대의 아이가 그린 것이라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만나게 된 두 소녀는 만화를 향한 열정을 공유하며 눈부신 시간을 함께한다. 몇 년 뒤, 엄청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요시아마 기요타카의 애니메이션 〈록백〉은 글로벌 히트작인 판타지 액션 만화 〈체인소 맨〉(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OTT에서 동명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스트리밍 중이기도 하다)의 작가 후지모토 다쓰키의 동명 단편을 원작으로

한다. 58분이라는 짧은 상영시간이 전혀 의식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밀도와 디테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작품이다. 일본에서만 누적 관객 97만 명, 흥행 수입 16억 엔(약 148억 원)을 기록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 9월 초 개봉한 이래 현재 20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는 힘을 발휘 중이다.

가장 먼저, 〈록백〉은 창작자가 되고 싶다는 소녀들의 뜨거운 열망이 어떤 노력과 의지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소도시의 소녀들은 그림을 따로 정식으로 배울 만한 곳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드로잉 작업이나 인체 소묘법 등의 책을 구입하여 그 안의 내용을 필사적으로 따라 그리며 스스로 깨우쳐나가야 한다. 책상 앞에 몇 시간이고 구부정하게 앉아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발전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가며 끈질기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어린 창작자들의 꿈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받지 못한다.

후지노의 경우,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입을 모아 묻는다.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마음속에서 껴잡어내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야기와 그림들이 있고, 후지노는 그것을 그려야만 한다. 하지만 주변에선 중학교로 진학해서도 계속 만화를 그리면 사람들이 ‘오타쿠’라고 생각해서 싫어할 것이다, 성적은 신경 안 쓸 거냐, 생활지도표에 ‘땀 몇 하개’ 적어넣을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가라데를 배우는 건 어떠냐고 충고한다. 어떤 아이들에겐 초등학교 시절의 꿈이 평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가 된다는 걸, 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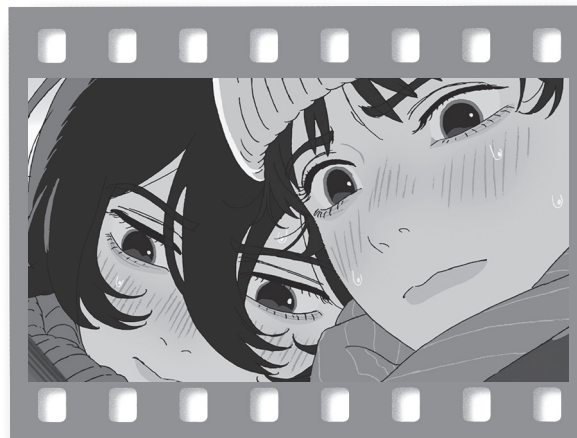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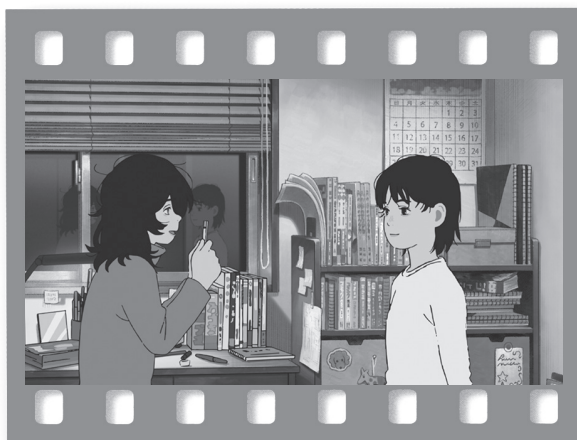
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저 남들처럼 무난하고 평범한 선을 따라 걷기를 원한다.

후지노와 교모토에게 있어, 비밀스럽게 간직하던 꿈을 알아준 건 서로가 유일했다. 학교 신문 만화란을 통해서 서로의 이름만을 보던 두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식날 처음으로 대면한다. 교모토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이라고 생각해 열등감을 품고 있던 후지노에게, 교모토는 감격에 찬 얼굴로 “4학년 때부터 너의 팬이었어”라고 소리지른다. “너의 다음 작품을 꼭 보고 싶어!” 자신이 모자라다는 생각에,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염려 때문에 만화를 포기하려 했던 후지노는 교모토의 그 한 마디에 새로운 힘을 얻는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게 두려워서 등교 거부를 하던 교모토에게는 더더욱 각별한 만남이었다. 가족들도 그를 방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지만, 후지노라는 친구를 통

해 그는 혼자만의 꿈 안에만 틀어박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발을 들이면서 꿈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인정욕구에 목말랐던, 자신의 재능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고립된 환경의 소녀들은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가 마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등’이 되어준다. 나는 그림을 그려도 괜찮다, 내 꿈을 따라가도 괜찮다. 후지노와 교모토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꿈을 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간다.

고통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후지노와 교모토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말이 간직되어 있다. “만화를 그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세상에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더없이 아름답고 유려한 작화와 더불어, 내면의 투쟁과 갈등을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의 특성으로만 가능한 방식으로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가닿는 정서를 폭발시키는 힘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 외로움의 습격

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다

김만권 지음

헤다, 2024(1판 3쇄)



저녁 먹고 산책하며 라디오를 듣는데 차이 코프스키의 가곡 “외로움을 아는 자만이”가 흐르기 전 진행자가 ‘외로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서부터 영국의 외로움부 장관 이야기까지, 그리하다 진행자가 울컥하는 것 같았다. 잠깐이었지만 그가 이 주제에 몰입했다고 생각하면서 노래 제목이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잠깐 그리고 그리움과 외로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했다.

친구의 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비혼인 당신 딸과 오래오래 잘 놀라고 당부하신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어머니, 저희 모두 언젠가는 독거노인이 될 거예요, 아무 개랑 오래 잘 놀게요.” 거의 모두 우리의 미래는 독거노인일 것이다. 사람과 만나지 못하면 시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시가 건강의 이상을 감지해 병원에 연락 해줄지도 모른다. 고독사가 급증한다는 시대, 살고 죽는데 어느 한 가지 간단한 것이 없다. 거기에 죽기 전까지 외로움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런 즈음 책을 읽었다. 철학자 김만권의 『외로움의 습격』이다. 책의 부제는 “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다” 이고 책장을 펼치면 면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 “외로운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책 제목부터 모든 것이 산하다.

책의 서문에도 등장하는 영국의 외로움부 장관 그리고 지은이가 인용한 한나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로움이 이토록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이 된 것은 20세기에 들

어서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어권에서는 16세기까지 외롭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괴테의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도 ‘외로움을 아는 자만이’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외로움은 지금 세기, 전 세계 모든 이의 과제가 되었다.

일본의 노인들은 외로움과 생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나라에서도 나날이 고독사가 늘어간다. 지은이는 외롭거나 외로워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일일이 알아낼 순 없지만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회·정치적으로 접근해 보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분명 우리를 이렇게 만든 21세기만의 조건이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이야말로 철학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은이가 인용한 한나 아렌트는 또 외로움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 그것이 ‘자아 상실’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우리의 경우 태극기 부대 같은 사례도 이와 비슷하다. 이 책은 이렇듯 외로움의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찬찬히 분석하고 사회 문화적, 분배와 경제적 차원, 권리 등으로 세분하여 대안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은이는 말한다. “어떤 인간도 자기 인생을 홀로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자기 책임의 윤리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 우리 모두 한 번은 생각하고 돌아볼 문제다.

이숙현 편집부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현장체험 연수를 마친 대학생들의 소감을 요약해서 싣는다.

### 이 예 린

동국대학교 법학과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전화실, 교육부, 도서실, 기타 업무 등을 보조하며, 서울가정법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원에 가서 상담위원께서 내담자분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를 가까이에서 보며 제가 실습을 시작할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첫 주의 막막했던 감정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실습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내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며 수그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4주간 실습을 하며 내담자분과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업무는 ‘전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전화 업무를 한 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상담을 돕기 위해 한 전화 업무가 비록 상담 안내였을 뿐이더라도 언젠가 저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위원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처럼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정 기 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다양한 내담자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혼 가정, 한부모가정, 외도 등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고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등의 절차를 이용하는데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경험은 기존의 편견을 개선하고 사회를 경험하며 현장실습생들과의 교류, 상담위원님으로부터의 배움, 판례공부를 통한 이론적 개선 등을 성취할 수 있었던 너무나 과분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항상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 송 도 윤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을 공부하는 것은 쉬울지라도 법을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화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인터넷에선 된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시나요?” 였던 걸 비추어 본다면, 생각보다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달의 연수 과정은 참 짧았지만, 제 생각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전 아무것도 겪어본 적이 없는 학생이라 ‘강자의 학문’인 법을 이해하지 못했었고, 그만큼 원고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달간의 연수 동안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부딪힘’이 아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부딪힘보다, 이제껏 변호사를 꿈꾼다는 사람이 정작 원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게 새로운 감정을 선물해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너무 감사합니다.



## 본소 이사인 박영립 변호사, '명덕상' 수상



상담소 이사인 박영립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지난 9월 23일 열린 서울지방법변호사회(회장 김정옥) 창립 117주년 기념식 및 자축연에서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수여하는 영예의 '명덕상'을 수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박영립 변호사는 4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회 총무이사과 인권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소록도한센병보상청구소송 한국변호단 및 한센인권변호단 단장,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서울회 발전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법률가의 사회적 소명을 다해 법조인의 귀감이 됐으므로 상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명덕상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하고, 그중 30년 이상 개업변호사로 종사하면서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근거가 존재하고, 회의 발전은 물론 법조계 발전에 크게 기

여해 법조인에게 귀감이 되신 분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소개하였다.

수상자인 박영립 변호사는 소감을 통해 감사와 소회를 밝히면서 ‘사법연수원 13기 300명 세대로 사법연수원 시절 경험도 없고 준비가 부족한 새내기 변호사에게 현실은 너무나 높았고 사건 수임도 어려웠지만, 사건을 수임한다고 해도 처리하기는 더 어려웠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노동상담소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무료 변론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익혔다’고 회상했다.

박영립 변호사는 1989년 본소 백인변호사단에 가입한 이래 소송구조와 야간상담은 물론 상담소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본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사진 및 기사 참조 - 로리더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리갈 클리닉Ⅱ」 개강

9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개설 과목 「리갈 클리닉Ⅱ」 수업을 개강하였다. 본 과목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가정법률 관련 현장인 본 상담소에서의 상담 참관과 가사 소송관련 서류 검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하고 리갈 마인드를 함양하며 법률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의 구체적 내용은 강의, 법률상담 참관(본 상담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본 상담소 상담실), 상담참관

사례 발표와 토론 및 강평으로 구성되며,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과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가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9월 한달간 4주간의 강의를 수강하고,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본 상담소와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본 상담소 상담실에서 상담을 참관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실무자 교육

9월 26일 본소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노숙인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본소의 전규선 상담위원이 공적채무조정인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에

대해 강의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진희 대리가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제도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강의 후에는 그동안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과정에서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본소는 이러한 교육과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노숙인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고 장래 경제적 갇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찍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는 가정의 문제에 주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사건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고 이후에도 서울시 보현

## 2024년 9월 상담통계

| 총 건수 4,330   |       |           |    |    |      |  |
|--------------|-------|-----------|----|----|------|--|
| 법률상담 (3,461) |       |           |    |    |      |  |
| 면접           | 전화    | 인터넷       | 서신 | 지상 | 순회   |  |
| 967          | 2,405 | 76        | 6  | 1  | 6    |  |
| 화해조정         |       | 소장 등 서류작성 |    |    | 소송구조 |  |
| 734          |       | 34        |    |    | 101  |  |

• 인터넷 정보 이용 94,67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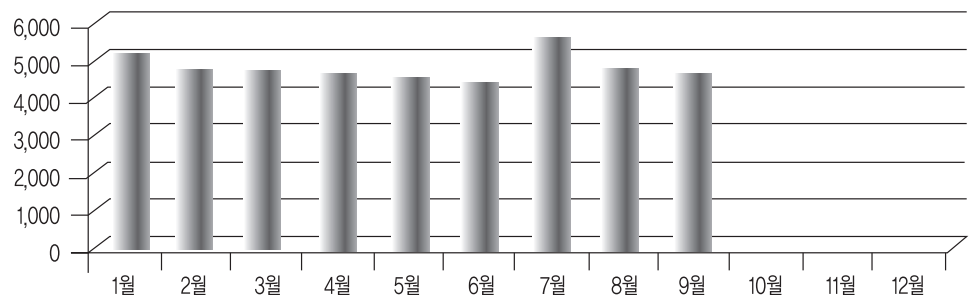
2024년 9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330건이었다. 상담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461건(79.9%), 화해조정 734건(17.0%), 소장 등 서류작성 34건(0.8%), 소송구조 101건(2.3%)이었다.

법률상담 3,46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8월에 비해 남녀관계(0.2%→0.4%), 부부갈등(3.5%→3.7%), 이혼(18.2%→22.4%),

면접교섭권(1.9%→2.0%), 친양자(0.5%→0.7%), 성변경(1.0%→1.1%), 가사기타(17.0%→20.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46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67건(27.9%), 전화상담 2,405건(69.5%), 인터넷상담 76건(2.2%), 서신상담 6건(0.2%), 지상상담 1건(0.0%), 순회상담 6건(0.2%)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의 집, 비전트레이닝센터 등 다수의 노숙인 이용시설과 노숙인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관련사진 2면)

##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 9.12.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애란원 - 복미영 상담위원



### 9.12. 파주 찾아가는 이동상담 - 조은경 상담위원

### 9.26. 노숙인신용회복을 위한 실무자교육 - 전규선 상담위원

##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9월 4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사건 조정을 하였다. 6일 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가족 저출생연구본부장, 김소영 연구위원, 본소 권지연 상담위원 등과 본소 8층 회의실에서 '조손가족의 가정위탁 현황과 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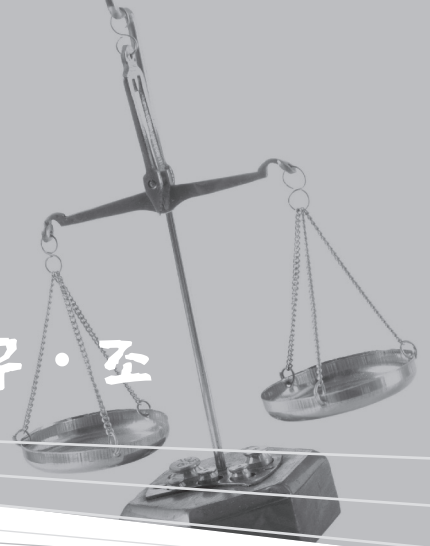
문제' 등에 관해 회의를 하였다. 9일 아동권리보장원 손호성 아동보호본부 아동보호기획부장, 김혜원 대리, 본소 권지연 상담위원 등과 본소 8층 회의실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약하에 진행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 법률지원'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23일 법무부 법무심 의관실 주관 가족법개정위원회와 24일 법무부 감사회의에 참석하였다. 30일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소장으로 취임하는 '고령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였고, 본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 수업에서 '가족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9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임용되어 리갈 클리닉(Ⅱ) 수업에서 본 상담소 소개 및 가족법의 변화 : 가족법 제 · 개정사 및 과제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30일에는 상담 참관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으며 상담 참관 계획을 수립하였다. 3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6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다. 30일에는 법무법인 YK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 곽배희 소장, '고령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 축하

본소 곽배희 소장은 9월 30일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는 '고령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사를 통해 "고령화사회와 법연구소가 고령 인구의 희망이 되고 그들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를 폭행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24-1-35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2020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 전 재산 상황과 직업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에게 피고는 계속하여 금전적 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마련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갔다. 피고는 거짓말이 밝혀진 이후에도 원고의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원고의 퇴직금마저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 등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피고는 술을 즐겨 마셨는데 술을 마실 때마다 원고의 얼굴에 술을 뿌리는 행동을 하였다. 2021년경 피고가 원고의 머리를 때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바 있으며, 2022년경 다리수술을 하고 퇴원한 원고의 가슴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8.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혼 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비양육자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법률구조 2024-1-332

담당 : 박성미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200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남, 16세, 14세)을 두었으나, 2013년 협의 이혼 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으나, 현실은 이혼 후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았고, 상대방의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제공받아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이 모두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과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2022년 7월경 상대방의 어머니는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결국 청구인은 2022년 8월경 상대방의 어머니가 작성해 온 약정서에 서명하고 2,6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아파트에게 퇴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약정서의 내용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장래양육비로 2,6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은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위 아파트를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2,600만 원을 지

급받아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할 곳을 물색하다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광역시로 이주하게 되었는바,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2022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약정서의 효력에 의하여 상대방이 관할관청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미 이행하였을 것으로 알고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2023년경 사건본인들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서야 현재까지도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내가 곧 파산신청을 하려 하는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파산결정이 잘 나온다고 한다. 그러니 아이들 양육자 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의 연락처를 수신 거부해 놓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절차에 협조할 의지가 전혀 없는바, 청구인은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8. 24.)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4. 9. 3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후 경매물로 나온 숙박업장을 대출로 인수받아 부친과 공동명의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만, 신청인의 부친은 연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하였기에 신청인이 홀로 숙박업장을 관리하였다. 신청인은 사업을 오랫동안 원활하게 운영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 역시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기대와 달리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권에서 인테리어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였고, 건물 보수 이후 숙박객이 늘었으나 일시적 현상에 그쳤다. 이후 신청인은 영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세입자를 들였으나 장사가 잘되지 않아 세입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와중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게 되었는데, 해당 세입자는 장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영업을 중지하고 도주해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약 1년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던 관계로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변호사 선임 비용과 대출 이자 등을 충당하였다.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졌고, 신청인의 건물은 경매로 처분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잔존채무를 변제하고자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백내장을 앓고 있어 오래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 월평균 70만 원을 받으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9. 12.)  
채무자를 면책한다.

###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법률구조 2024-1-204

담당 : 안미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대)은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장의 부지가 재개발되었고, 재개발 보상 명



## 2024년 10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11월 25일, 12월 휴강)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4년 2월, 5월, 8월, 11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총 4회)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 일정      | 강 의 제 목 |
|---------|---------|
| 11월 21일 | 부부대화법   |

###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 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 일 정     | 강 의 제 목                               | 강사                                |
|---------|---------------------------------------|-----------------------------------|
| 10월 16일 | 반복된 부정적 경험에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 황순찬<br>초빙교수<br>(인하대학교<br>사회복지 학과) |
| 11월 6일  |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                                   |
| 12월 11일 |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                                   |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



현행 가사소송법(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은 올해로 시행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가족 문제 역시 다양해졌으나 가사재판절차를 규율하는 가사소송법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만 따른 일부 개정만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특히 이혼과 자녀 양육 등 가사사건에 있어 국민의 인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가정법원이 가족복리를 위한 후견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미 2015년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된 바 있었고,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동 개정법률안들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가사소송법이 정제상태를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절차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좌 장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김원태(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배인구(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이광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인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민(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